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기업은 고령자가 갖고 있는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불안 없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십시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홈페이지: www.moel.go.kr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서울고용센터	02-2004-7301	김해고용센터밀양출장센터	055-356-8225
서울서초고용센터	02-580-4900	양산고용센터	055-379-2400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794	진주고용센터	055-753-9090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924	하동고용센터	055-884-8219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00	통영고용센터	055-650-1800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300	거제고용센터	055-730-1919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700	대구고용센터	053-667-6000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200	경산고용센터	053-667-6800
인천고용센터	032-460-4701	대구북부고용센터	053-605-6500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12-1919	대구강북고용센터	053-606-8000
부천고용센터	032-320-8900	포항고용센터	054-280-3000
김포고용센터	031-999-0900	포항고용센터울진출장센터	054-783-0841
의정부고용센터	031-828-0812	경주고용센터	054-778-2500
구리고용센터	031-560-5815	구미고용센터	054-440-3300
고양고용센터	031-920-3937	김천고용센터	054-431-2728
수원고용센터	031-231-7864	영주고용센터	054-639-1122
용인고용센터	031-289-2210	문경고용센터	054-556-8219
평택고용센터	031-646-1202	안동고용센터	054-851-8061
평택고용센터안성출장센터	031-671-1921	광주고용센터	062-609-8500
안양고용센터	031-463-0700	전주고용센터	063-270-9100
광명고용센터	02-2680-1500	정읍고용센터	063-532-8216
안산고용센터	031-412-6993	남원고용센터	063-631-1919
시흥고용센터	031-496-1909	익산고용센터	063-840-6500
성남고용센터	031-739-3174	익산고용센터김제출장센터	063-548-1919
성남고용센터이천출장센터	031-632-9898	군산고용센터	063-450-0600
경기광주고용센터	031-769-0168	군산고용센터부안출장센터	063-581-7637
춘천고용센터	033-250-1900	목포고용센터	061-280-0500
강릉고용센터	033-610-1919	순천고용센터	061-720-9114
속초고용센터	033-630-1919	여수고용센터	061-6500-155
원주고용센터	033-769-0900	대전고용센터	042-480-6000
태백고용센터	033-552-8605	공주고용센터	041-851-8501
태백고용센터삼척출장센터	033-573-9911	공주센터논산출장센터	041-731-8600
영월고용센터	033-371-6260	공주센터연기출장센터	041-861-8900
부산고용센터	051-860-1919	청주고용센터	043-230-6700
부산동부고용센터	051-760-7103	옥천고용센터	043-731-7414
부산북부고용센터	051-330-9900	천안고용센터	041-620-7400
창원고용센터	055-239-0900	충주고용센터	043-850-4000
마산고용센터	055-259-1500	제천고용센터	043-652-1919
창원고용센터진해출장센터	055-547-6277	보령고용센터	041-930-6200
울산고용센터	052-228-1919	서산고용센터	041-669-1919
김해고용센터	055-330-6400		

임금피크제지원금



“임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계속 일하고 싶은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50세부터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월 5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ww.moel.go.kr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지원금으로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
고용을 연장하면서 기준 감액률 이상
임금 감액하고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지원내용

피크임금의 소정 비율 금액과 신청시점
임금의 차액을 연 600만원 한도내에서
50세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절차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말(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1.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요?

-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다음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여부가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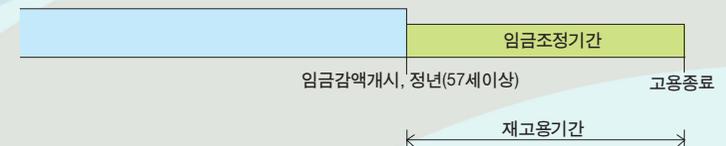
① 정년연장형

기존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정년 전(50세 이후)부터 임금감액



② 재고용형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감액하거나, 정년퇴직자를 3개월 이내 고용하면서 정년 퇴직 이후부터 임금 감액



③ 근로시간 단축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또는 정년퇴직 이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

2.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 임금피크제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져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감액후 연간 임금이 5,67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 기준감액률 이상 임금이 감액되어야 함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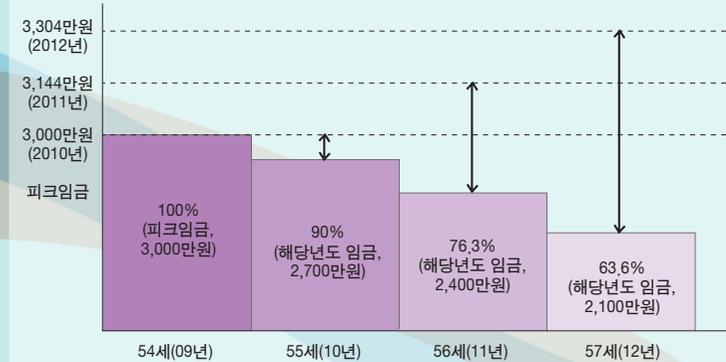
※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

※ 기준감액률 : 정년연장형 및 재고용형(정년전 임금감액은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재고용형(정년이후 임금감액)은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 근로시간 단축형은 50%

[연도별 임금 인상률]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1.7	4.8	5.1

[근로자 A의 임금피크제 적용 현황]



- 근로자 A가 '09년 54세에 피크임금 3,000만원을 받았고 '12년 57세에 연 2,100만원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그간의 임금인상률 9.9%('10년·'11년 임금인상률)를 반영한 3,304만원 (3,000만원×104.8%×105.1%)과 신청 연도 임금 2,100만원을 비교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피크임금의 소정 비율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기준

① 정년연장형

-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와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
-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재고용형

- 정년 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와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피크임금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와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
-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③ 근로시간단축형

- 피크임금 대비 50%와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
- 최대 10년간(재고용의 경우는 5년간)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까지(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에 의한 대리신청도 가능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② 신청서류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1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서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피크임금과 해당기간 임금을 비교하여 해당기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연단위 신청 시 피크 연도 및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분기단위 신청 시 피크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해당 분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각 1부를 제출하되, 해당연도 4분기 또는 마지막 신청 시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고용센터에서는 피크임금과 신청 시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 감액 여부를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지원금 신청을 일괄하여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를 근로자별로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